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 10% 이상 편성 의무화 등〉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6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 10% 이상 편성 의무화(안 제4조제2항 신설)	2
2. 연구개발비 전액의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안 제6조제4항 신설)	6
3.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안 제7조제4호 신설)	10
4.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13
5.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및 지원(안 제8조의2 신설)	15
6. 기초연구 현황 조사·분석 및 전담기관 지정(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2. 23.

다.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기초연구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 10% 이상 편성 의무화(안 제4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4조제2항은 국가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¹⁾에 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 9.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u><신설></u>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 ----- -----. ② 국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개발예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연구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바 있음. 특히 현행법에는 기초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비율을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예산 운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의 하한(10%)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2022~2026년) 전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6%, 2023년 8.3%, 2024년 9.9%, 2025년 9.9%, 2026년 9.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1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10% 이상 편성을 법정화할 경우, 기초연구 분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 >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 R&D 예산	297,770	310,778	265,369	295,968	353,526
기초연구사업 예산	25,488	25,885	26,326	29,315	33,585
정부 R&D 대비 비중	8.6%	8.3%	9.9%	9.9%	9.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만, 국가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다양한 국가적 수요에 맞추어 배분하는 과정인데,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일정하거나 한정적인 상황에서 특정 분야(기초연구)의 예산 비율만을 하한으로 고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응용·개발연구나 신종 감염병 및 재난 대응 등 긴급한 국가적 현안이 발생하는 다른 R&D 분야의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초연구 투자의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정된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 전액의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안 제6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6조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조²⁾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기초연구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특성상 다년도에 걸쳐

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 국가 재정 여건이나 예산 편성 과정상의 사정으로 당초 계획된 연차별 연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연구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연구 수행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단년도주의)’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체계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별 법률에서 특정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소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두는 것은, 비록 재량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권 및 재정운용의 유연성

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기초연금 등 다른 강력한 법정 의무지출 사업³⁾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서 소요액 전액의 예산 반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책무나 재원 조성의 필요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형평성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실적인 R&D 예산 배분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의 실무적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로부터 한도액⁴⁾(총액)을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와 신규과제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만약 확보된 전체 예산 규모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계속과제의 연차별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신규과제, 신진 연구자 지원, 미래 기술

3)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수요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 연구의 안정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예산 배분의 탄력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연구개발 재원의 균형 있는 배분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안 제7조제4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7조제4호는 정부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정책에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u>
<u>4. ~ 8.</u> (생략)	<u>5. ~ 9.</u>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R&D 생태계 위축 우려 등에 따라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신진 연구자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임. 개정안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

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원 대상인 ‘청년 연구자’의 범위가 불명확함.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론, 타 과학기술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청년 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연령적·직위적(학위과정, 박사후연구원 등) 정의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향후 재정 지원의 대상과 요건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 연구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타 법률에 근거하여 기추진 중인 지원 사업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3⁵⁾에 근거하여 ‘이공계 연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구 생활장려금(R&D)’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2025년 600억 원(39개 대학), 2026년에는 830억 4,300만 원(54개 대학 예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시행 중임.

- 해당 사업은 주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범위를 박사후연구원(Post-Doc)이나 신진 연구인력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할 경우 기초연구 분야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원이 기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단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차별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8조는 정부가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 시설·장비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u>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u> 한다.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 ----- <u>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u> -----.
<신 설>	1. <u>연구 시설·장비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u>
<신 설>	2. <u>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u>
<신 설>	3. <u>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확충 및 지원</u>
<신 설>	4. <u>그 밖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나. 검토의견

- 대학은 국가 기초연구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장비의

노후화, 첨단 인프라 부족, 연구행정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이러한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 조치를 시설·장비, AI 정보 인프라, 인력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최근 데이터 기반 연구 및 인공지능 활용 연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명시한 것은 대학의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확충’ 지원은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및 지원(안 제8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8조의2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이하 “국가기초과학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8조의2는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 부설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2025년부터 신규 추진 중인 “국가연구소(NRL⁶⁾ 2.0)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집단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 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는 총 8개 과제에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대학 내 기초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안정적인 집단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초과학연구소를 지정 및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설되는 ‘국가기초과학연구소’라는 명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⁷⁾에 따라 이미 설립

6) Nurturing excellence, Removing barriers, Leading research ecosystem

되어 운영 중인 별도의 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유사하여 기관 간 역할 중복 등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6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명칭이 현행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 실제 두 제도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되어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장기간 탐구를 수행하는 독립된 ‘공공연구기관’이며,
- 본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국가연구소(NRL 2.0)는 파편화된 개별 연구실(Lab) 단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기존 ‘대학 연구’의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 내 연구소를 기반으로 연구집단을 규모화·조직화하여 안정적인 대형·융복합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초과학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업 성격에 맞게 ‘국가연구소’로 변경하거나, 해당 조문에 지정 대상이 ‘대학 부설 연구소’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기초연구 현황 조사·분석 및 전담기관 지정(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는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초연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전담 추진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안 제13조의3의 ‘기초연구 현황 조사·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기초연구사업 통계연보’ 및 ‘기초연구사업 투자성과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이에 더해 기초연구 분야에 특화된 현황 및 성과 분석의 법적 근거를 개별법에 명확히 신설함으로써, 기초연구 생태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통계 구축 및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 제13조의4의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기초연구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부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사업 위탁 및 시범사업 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대형 연구인프라 조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최고과학자 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 지원) 등 복수의 기관을 각 업무 성격에 맞게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설명함.

- 한편, 현재 우리위원회에는 본 개정안과 유사하게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제9조) 및 전담기관 지정(제28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485)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전부개정법률안과 본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조항들을 함께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